

# 하반기 달라지는 가스관련 제도



##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클시스템 시행

굴착공사기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범위를 ‘도시가스가 허가된 지역’으로 확대하고 ‘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’를 설치해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, 인터넷 등으로 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지난 6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
## 가스기술기준 중 상세기준 개정 권한 민간 이양

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·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 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·개정돼 지난 6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.

##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 신고 시행

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의 (변경) 승인 또는 (변경)신고를 한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허가(신고)가 필요한 시설(지상 콘크리트구조물 형태)이 있으면 건축허가 처리 신고서

를 제출하면 된다.

## 도시가스 배관 매설깊이 기준 완화

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를 0.8m에서 0.6m로, 폭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mm 이하 저압(0.1km 미만) 배관 매설깊이를 1.0m에서 0.8m로 각각 완화된다. 개정안은 7월 중 공포, 시행된다.

## 완공도면 중복제출 면제

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 시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가 완공도면을 제출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별도로 완공도면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7월 중 공포·시행된다.

## LPG 충전기술 운용체계 개편

LPG충전 등 기술기준 운용체계를 개편해 액법시행규칙에는 순수 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만 규정하고 순수 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바뀐다. ●